

대전지방법원 2022. 5. 31 선고 2020가단142841 판결 [사해행위취소.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

피 고 1. A

2. B

3. C

피고 2,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규

변 론 종 결 2022. 4. 19.

판 결 선 고 2022. 5. 31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74,675,475원 및 그중 74,213,059원에 대하여 2020. 12. 10.부터 2021. 3. 20.까지는 연 8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 B, C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B,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 A과 피고 B,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8. 31. 체결한 매매계약은 74,675,47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 B, C는 각자 원고에게 74,675,4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

1) 피고 A은 2014. 2. 7. 원고와 보증원금 85,000,000원, 보증기한 2015. 2. 6.까지(이후 보증원금은 73,950,000원, 보증기한은 2021. 1. 29.까지로 변경되었다)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D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.

2)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,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(2019. 4. 1.부터 현재까지 연 8%)에 의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, 구상금채권의 보전,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.

나.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

피고 A이 2020. 11. 7.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가 발생하자, 원고는 2020. 12. 10. D은행에 74,365,009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, 151,950원을 회수하였다. 위 회수금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33원이고,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462,383원의 대지급금(법적절차비용)을 지출하였다.

다. 매매계약의 체결 등

1) 피고들은 2020. 8. 31.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2020. 10. 13.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, C 앞으로 각 1/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2)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(채무자 피고 A, 채권최고액 12억 원)가 마쳐져 있었고, 2020. 10. 13. 위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고 주식회사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(채무자 피고 B, 채권최고액 14억 4,000만 원)가 마쳐졌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9호증, 을나 제1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기초사실에 의하면,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금 74,213,059원(= 74,365,009원 - 151,950원), 확정손해금 33원, 대지급금 462,383원 합계 74,675,47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금 74,213,05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. 12. 10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. 3. 20.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 B,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피고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친분관계에 있는 피고 B,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바,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다.

나. 판단

1) 피보전채권의 존부

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0. 8. 31. 이후 발생하였다.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천안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2014. 2. 7.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, 원고가 운영하던 'F주유소'가 영업악화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2020. 11. 2. 폐업하였으며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두 달여 만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,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,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2)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

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0호증의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, 이 법원의 G조합, H은행,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,598,857,06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,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천안시 서북구 I, J 토지 외에는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 B,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였는바,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기, 당시 피고 A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,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	재산	가액 (원)
적극 재산	이 사건 각 부동산	1,800,000,000
	천안시 서북구 I 잡종지 1㎡	110,500
	천안시 서북구 J 잡종지 1㎡	110,500
	합계	1,800,221,000
소극 재산	D은행에 대한 대출금	87,000,000
	G조합에 대한 대출금	19,594,069
	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	1,432,000,000
	H은행에 대한 대출금	44,000,000
	K카드 카드대금 및 현금서비스	12,235,000
	D카드 카드대금 및 현금서비스	4,028,000
	합계	1,598,857,069

3) 피고 B, C의 선의 여부

앞서 든 각 증거와 을나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, 피고 B,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.

-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까지 피고들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.
- ② 피고 B, C는 공인중개사 L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진행하였고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2억 원을 피고 A에게 지급하였으며, 2020. 10. 13.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E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1,048,534,455원은 피고 A의 근저당권부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, 541,465,545원은 피고 A에게 각 지급하고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1,000만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18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. 또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으로 86,841,154원을 지출하고, 공인중개사 L에게 중개수수료 16,250,000원을 지급하였다.
-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부당한 염가라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과정과 달리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.
- ④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, C가 피고 A의 신용상태나 사해행위성 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.

4. 결론

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, 피고 B,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장민하

별지